

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

오승연 연구위원, 김미화 연구원

요약

■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재무·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,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. 법안의 통과로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리목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허위·부당청구가 감소하고 기관의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 한편,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개정법률에서 제시한 인건비 지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, 그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.

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2016년 5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음.

●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, 재무·회계기준 적용 대상 기관을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, 둘째,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급, 셋째,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임.

■ 동 개정안의 통과로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이 기관들의 허위·부당청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.

●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개설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.

● 개정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이하 ‘개정법률’)에 따라 새로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목적의 개인 기관들임.¹⁾

－ 개인 기관은 전체 재가요양기관의 80.2%(2014년 기준)를 차지하고 있음.²⁾

- 장기요양기관의 허위·부당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, 특히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법인 기관보다 더욱 빈번하게 허위·부당청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11년 97억 원에서 2014년 17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.³⁾
-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의 비중을 보면 개인 기관(83%)이 법인 (55.6%)보다 훨씬 높음(<표 1>참조).

〈표 1〉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별 부당청구 유형

(단위: 개소, 백만 원)

구분	현지조사 기관 수	부당기관 수(%)	조사기관 청구금액	부당금액(%)	기관당 부당금액
합계	921	665(72.2)	480,581	17,833(3.7)	27
개인	558	463(83.0)	206,413	10,270(5.0)	22
법인	363	202(55.6)	274,168	7,563(2.8)	37

자료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5. 3. 3), “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 적발”.

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개정법률에는 요양급여의 일정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함.

- 그 동안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은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요양급여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음.
- 요양급여 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가 하향 수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개정법률에서 제시한 인건비 지급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,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.⁴⁾
 -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

1) 이처럼 개인 기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관 설립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한 결과임.

2) 선우덕(2015. 11. 30), 「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」, 『보건·복지 Issue & Focus』, 제299호,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3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5. 3. 3), “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 적발”.

4) 특히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·폭행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수급자 및 가족의 교육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.